

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1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

2. 주요내용

-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(안 제2조의2) 개정
 - (현 행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.
 - (개 정 안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: 【붙임 4】

바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5. 9. 10. ~ 2025. 9. 30. (20일간)

사. 기타 참고사항

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
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기획경제실
입	기획예산과장	박 승 규
안	기획팀장	정 경 수
자	담 당 자 (연 락 처)	김 연 지 (481-2803)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제2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25년 12월 31일</u> 로 한다.	제2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--- ----- <u>2030년 12월 31일</u> 로 한다.